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를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및 주택공급기획팀을 각각 폐지하며,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30일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토교통 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에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뉴미디어홍보팀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의 보임 가능 직급 및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의 보임 가능 직급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99.99. ~ 99.99.)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소통팀장”을 각각 “뉴미디어홍보팀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디지털소통”을 “뉴미디어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디지털소통”을 “부내 뉴미디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디지털 채널을”을 “부내 뉴미디어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내 대표 홈페이지 정책 홍보 기획·운영

8. 협업 인플루언서단 구성·운영

제8조제7항 중 “주택정비과·주택공급기획팀”을 “주택정비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0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철도안전감독관의 운영 등 철도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2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11항 제18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을 “홍

천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제3호 중 “집행”을 “편성·집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4항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열차승무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5항 제8호 중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을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특별경비계획의 수립·시행

16.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보급 및 운영

제61조제11항을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1,010”을 “1,012”로 하고, 일반직 계 “999”를 “1,001”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0”을 “61”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52”를 “53”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015”을 “1,017”로 하고, 일반직 계 “1,004”를 “1,00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4”를 “65”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47”을 “48”로 한다.

별표 19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철도국 수도권광역급 행철도과	3명 (5급 1명, 6급 2명)	2025년 9월 30일까지
-----------------------	----------------------	----------------

별표 20 제9호를 삭제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5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7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을 “2025년”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84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뉴미디어홍보팀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뉴미디어홍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뉴미디어홍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변인) ① (생 략)	제2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u>디지털소통팀장</u> 각 1명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u>디지털소통팀장</u> 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u>뉴미디어홍보팀장</u> ----- ----- ----- <u>뉴미디어홍보팀장</u>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디지털소통팀장</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④ <u>뉴미디어홍보팀장</u> ----- -----.
1. 주요 정책에 대한 <u>디지털소통</u> 계획의 수립 · 운영	1. ----- <u>뉴미디어</u> <u>홍보</u> -----
2. <u>디지털소통</u> 관련 채널의 운영 및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 활용	2. <u>부내 뉴미디어</u> ----- ----- -
3. <u>디지털 채널</u> 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소통	3. <u>부내 뉴미디어</u> 를 -----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u>신 설</u> >	7. <u>부내 대표 홈페이지 정책</u> <u>홍</u>

<신 설>

제8조(주택토지실) ① ~ ⑤ (생략)

⑥ 삭제

⑦ 주택토지실에 주택정책과 · 주택기금과 ·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정비과 · 주택공급기획팀 · 주거복지정책과 · 주거복지지원과 · 공공주택정책과 · 민간임대정책과 · 토지정책과 · 부동산투자제도과 · 부동산평가과 · 부동산개발산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 ⑪ (생략)

⑫ 주택공급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전국 270만호 주택공급 대책(이하 이 항에서 “주택공급 대책”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보 기 획 · 운 영

8. 협업 인플루언서단 구성 · 운영

제8조(주택토지실) ① ~ ⑤ (현행
과 같음)

⑦

주택정비과

⑧ ~ ⑪ (현행과 같음)

<삭 제>

<u>2. 주택공급 대책 관련 입법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u>3. 주택공급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u> <u>4.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에 관한 사항</u> <u>5. 주택공급 대책 관련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 이행 등에 관한 사항</u> <u>6. 미분양통계의 생산·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⑬ ~ ⑭ (생략) ⑮ 삭제 ⑯ ~ ㉑ (생략) ㉒ ~ ㉓ 삭제 제14조(철도국) ① ~ ⑨ (생략) ⑩ 철도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u><신설></u> <u><신설></u> ⑪ 철도운행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⑭ (현행과 같음) ⑯ ~ ㉑ (현행과 같음) 제14조(철도국)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20. (현행과 같음) <u>21. 철도안전감독관의 운영 등 철도안전감독에 관한 사항</u> <u>2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⑪ ----- -----.
--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u>철도안전감독관의 운영 등</u> <u>철도안전감독에 관한 사항</u>	<u><삭제></u>
19. ~ 20. (생략)	19. ~ 20. (현행과 같음)
21. <u>철도특별사법경찰대 업무</u> <u>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한</u> <u>사항</u>	<u><삭제></u>
⑫ (생략)	⑫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역협력국) ① 지역협력 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 기관으로 보한다. <u>다만, 서울지</u> <u>방국토관리청의 지역협력국장</u> <u>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u> <u>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u> <u>로 보한다.</u>	제18조(지역협력국) ① ----- ----- ----- <u><단서 삭제></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① (생 략)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① (현행 과 같음)
② <u>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홍천</u> <u>국토관리사무소장, 논산국토관</u> <u>리사무소장, 광주국토관리사무</u> <u>소장,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u> <u>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은 과학</u> <u>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u> <u>하며,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u> <u>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국</u>	② <u>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u> ---- ----- ----- ----- ----- ----- <u>수원국토관리사무</u> <u>소장,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u> -- -----

토관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⑧ 삭제

제46조(철도경철대) ①·② (생략)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 7. (생략)

8. 열차승무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 10. (생략)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 4. 삭제

5. 특별경비계획의 수립 · 시행

6. · 7. (생략)

8.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9. · 10. (생략)

<신설>

⑤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의 운용 · 관리

9. ~ 14. (생략)

<신설>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 편성 · 집행 -----
--

4. ~ 7. (현행과 같음)

<삭제>

9. · 10. (현행과 같음)

④ -----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6. · 7. (현행과 같음)

<삭제>

9. · 10. (현행과 같음)

11. 열차승무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
-----.

1. ~ 7. (현행과 같음)

8.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 등

9. ~ 14. (현행과 같음)

15. 특별경비계획의 수립 · 시행

<신 설>

제61조(한시정원) ① ~ ③ 삭제

④ · ⑤ (생략)

⑥ · ⑦ 삭제

⑧ (생략)

⑨ 삭제

⑩ (생략)

⑪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⑫ (생략)

국토교통부령 제55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16.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보급

및 운영

제61조(한시정원)

④ · ⑤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삭 제>

⑫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령 제55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u>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u>	
국토교통부령 제77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7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은 <u>2023년</u>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5년</u> ----- -----. ②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령 제84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4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u>	<u><삭 제></u>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설치되는 주택공급기획팀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주택공급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주택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7]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10</u>	<u>1,012</u>	+2
·	·	·	
·	·	·	
일반직 계	<u>999</u>	<u>1,001</u>	+2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60</u>	<u>61</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u>52</u>	<u>53</u>	+1
·	·	·	
·	·	·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15</u>	<u>1,017</u>	+2
•	•	•	
•	•	•	
일반직 계	<u>1,004</u>	<u>1,006</u>	+2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64</u>	<u>65</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u>47</u>	<u>48</u>	+1
•	•	•	
•	•	•	